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 추진 근거 규정 및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등〉

- 임호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603호)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258호)
- 임종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571호)

2024.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과 현 준

목 차

I . 임호선의원 대표발의(제2200603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1
3. 주요내용	2
II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제2201258호)	4
1. 제안경위	4
2. 제안이유	4
3. 주요내용	5
III . 임종득의원 대표발의(제2201571호)	7
1. 제안경위	7
2. 제안이유	7
3. 주요내용	7
IV . 검토의견	10
1. 제정안의 취지 및 제안배경	10
2. 제정안의 구조 및 내용 비교	12
3. 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15
4. 총괄적 검토	20
5. 조문별 검토	23

가. 목적, 정의 및 기본방향(안 제1조 ~ 제3조)	23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4조)	25
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계획과의 관계(안 제5조 및 제6조)	26
라.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안 제7조)	28
마.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8조)	32
바. 시행자 및 실시계획의 승인 등(안 제9조 및 제10조)	34
사. 인허가등의 의제(안 제11조)	36
아. 역세권개발사업 또는 주변지개발사업(안 제12조)	41
자. 추진단 설립(임종득의원안 제13조)	44
차. 비용부담(임호선의의원안·문진석의원안 제13조, 임종득의원안 제14조)	45
카. 부담금 등의 감면(문진석의원안 제14조)	47
타. 지역기업의 우대(임호선의의원안 제14조, 문진석의원안·임종득의원안 제15조)	48
파. 보칙(임호선의의원안 제15조~제18조, 문진석의원안·임종득의원안 제16조~제19조)	51
하. 벌칙 및 부칙(임호선의의원안 제19조~제21조, 문진석의원안·임종득의원안 제20조~제22조)	53

I. 임호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603호)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임호선의원 등 17인

나. 제 안 일 : 2024. 6. 18.

다. 회 부 일 : 2024. 6. 19.

2. 제안이유

충청남도, 충청북도 및 경상북도 간 지역화합과 상생발전을 위하여 중부권을 아우르는 철도 건설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여전히 중부권을 동서로 횡단하는 철도가 없어 중부권의 동서 간 여객·물류 교통인프라가 열악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

이에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에 필요한 절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여 중부권의 동서 간 교통접근성을 개선하고, 나아가 중부경제권 조성을 촉진하여 수도권 중심의 경제구조를 탈피하는 기반을 마련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충청남도 서산시와 경상북도 울진군을 연결하는 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필요한 재원 반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이 법은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에 관하여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함(안 제5조).

라.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하도록 함(안 제6조).

마. 기획재정부장관은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실시계획의 작

성·승인, 사업시행자 및 각종 인허가등의 의제 등 중부권동서횡단 철도 건설사업을 위한 시행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1조 까지).

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역세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역세권개발구역 지정 및 역세권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13조).

자.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Ⅱ.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258호)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문진석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4. 7. 1.

다. 회 부 일 : 2024. 7. 2.

2. 제안이유

중부권동서횡단철도는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를 잇는 총연장 약 330km의 대규모 국책 건의사업으로, 서해안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망 구축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임.

지방소멸 대응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중부내륙을 횡단하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수년째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지 못해, 중부권 동·서간 교류를 위한 인프라 구축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음.

이에 중부권동서횡단철도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건설에 필요한 절차,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마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부담금 완화 등을 규정하여 중부권 동·서 교류를 위한 교통 인프라 구축,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부경제권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충청남도 서산시와 경상북도 울진군을 연결하는 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필요한 재원 반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이 법은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에 관하여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함(안 제5조).

라.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하도록 함(안 제6조).

마. 기획재정부장관은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실시계획의 작성

· 승인, 사업시행자 및 각종 인허가등의 의제 등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을 위한 시행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역세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역세권개발구역 지정 및 역세권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13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각 개별법에서 정하는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차.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Ⅲ. 임종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571호)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임종득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4. 7. 10.

다. 회 부 일 : 2024. 7. 11.

2. 제안이유

충청남도·충청북도 및 경상북도 간 지역화합과 상생발전을 위하여 중부권을 아우르는 철도 건설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여전히 중부권을 동서로 횡단하는 철도가 없어 해당 지역의 여객·물류 교통인프라가 열악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

이에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에 필요한 절차, 규제의 특례 등을 규정한 특별법을 마련함으로써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여 중부권의 동서 간 교통접근성을 개선하는 한편 중부경제권 조성을 촉진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충청남도 서산시와 경상북도 울진군을 연결하는 철도의 신속한 건

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필요한 재원 반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이 법은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에 관하여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함(안 제5조).

라.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하도록 함(안 제6조).

마. 기획재정부장관은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실시계획의 작성
· 승인, 사업시행자 및 각종 인허가등의 의제 등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을 위한 시행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사. 시·도지사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속철도역사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3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부권동서횡단철도건설추진단을 두도록 함(안 제13조).

자. 국가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및 주변개발예정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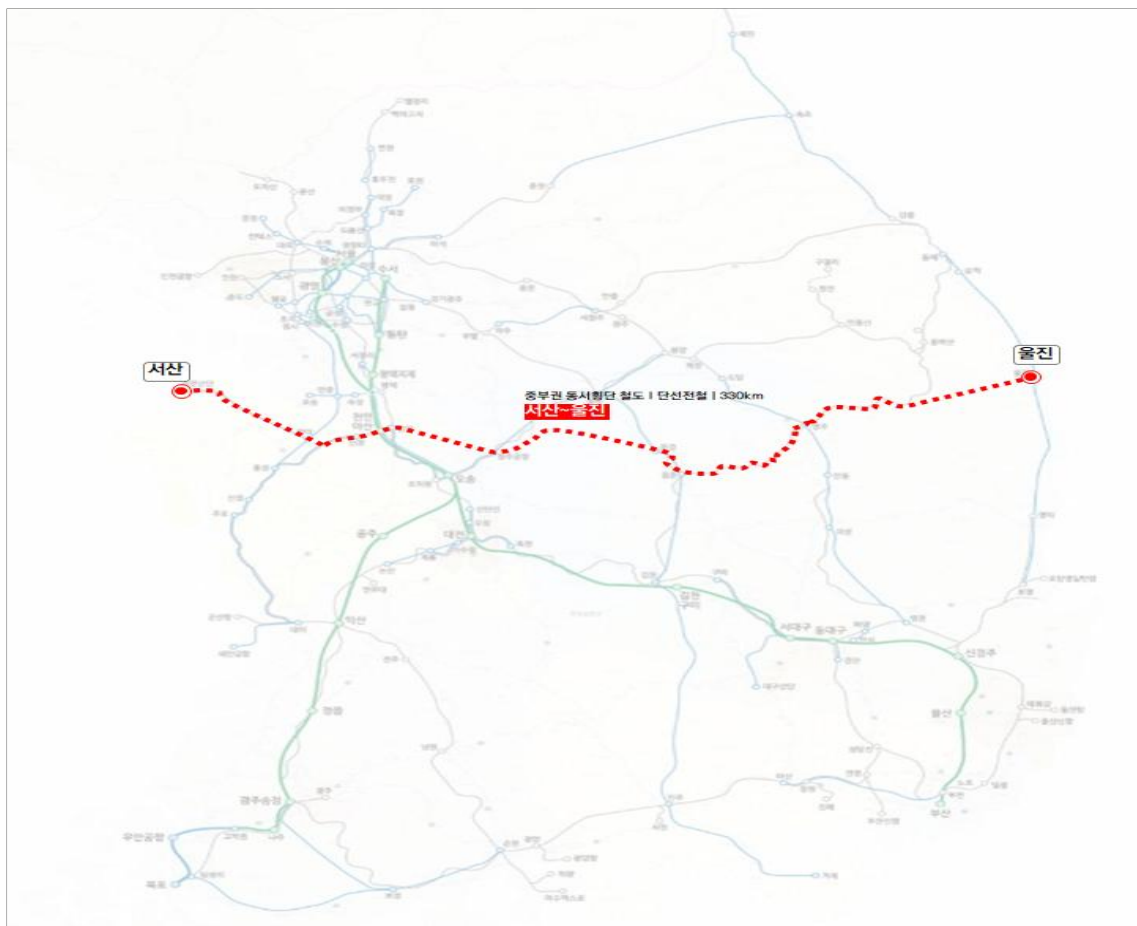
차.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IV. 검토의견

1. 제정안의 취지 및 제안배경

충청남도 서산시와 경상북도 울진군을 연결하는 철도(이하 “중부권동서횡단철도”)는 총 332.4km 연장의 단선전철을 총사업비 6조 3,604억원(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기준)규모로 건설하기 위한 사업임.

【중부권동서횡단철도 노선도】



※ 자료: 국토교통부

동 사업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일부구간이 반영된 바 있으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포함되었음.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추진 경위】

- 2016. 6.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일부구간*만 반영
* 아산·석문산단~합덕간 단선철도(L=36.5km)
- 2016. 3. :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추진협의체 구성(충남·북 경북 12개 시·군)
* 12개 시·군 협의체(충남 천안·서산·당진·예산·아산, 충북 청주·괴산, 경북 문경·예천·영주·봉화·울진)
- 2017.12. :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3억원) 2018년 예산에 포함
- 2018. 5.~2019. 4. :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 (용역기간) 2018.5.~2019.4. (용역기관) 서현기술단+서울대
- 2021. 7.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추가검토사업)
* 추가검토 사업은 장래 여건변화 등에 따라 추진 검토가 필요한 사업을 의미

노선명	사업구간	사업내용	연장(km)
중부권 동서횡단선	서산~울진	단선전철	322.4

- 2021. 9. : 철도망 구축 사업구상 용역 착수 (충남도)
- 2022.10. : 철도망 구축 사업구상 용역 착수 (경북도)
- 2023. 7. :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국토부, ~2025.4.)

※ 자료: 국토교통부

제정안은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 절차, 건설 지원을 위한 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제정안의 구조 및 내용 비교

세 건의 제정안은 모두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등 건설 절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건설 지원을 위한 특례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 구조 및 내용이 전반적으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유사함. 다만, 역세권개발사업, 부담금 감면 등 일부 조항에서 제정안 간 차이를 보임.

첫째, 역세권개발사업 조항과 관련하여 임호선의원안, 문진석의원안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동일하게 시·도지사가 역세권개발을 위해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역세권개발구역 지정 및 역세권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임종득의원안은 철도역사 예정지역 경계부터 3km 범위로 주변개발 예정지역 지정 및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둘째, 임종득의원안은 중부권동서횡단철도건설추진단이라는 전담조직 설립 근거를 두고 있는데, 임호선의원안, 문진석의원안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동일하게 전담조직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음.

셋째, 문진석의원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을 위해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등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임호선의원안, 임종득의원안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동일하게 별도 규정을 두지 않음.

【제정안 간 조문 구조 및 내용 비교】

구분	임호선의원안	문진석의원안	임종득의원안	달빛철도법
제명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목적	충청남도 서산시와 경상북도 울진군을 연결하는 철도의 건설에 필요한 사항 규정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를 연결
정의	중부권동서횡단철도,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정의			제정안과 유사
기본방향	충남, 충북, 경북 간 여객 물류의 확장과 미래수요를 반영한 첨단화 추진 등			제정안과 유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지자체의 상호협력 및 국가의 재원 반영 노력			제정안과 유사
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에 대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			제정안과 유사
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계획은 다른 계획에 우선하되, 국토종합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예외			제정안과 유사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 시 예타 면제 가능			제정안과 유사
기본계획의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이 수요예측, 경제성·타당성 평가 등을 포함하여 기본계획 수립			제정안과 유사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시행자는 국가, 지자체 또는 국가철도공단으로 하되 민간투자자에 따른 건설 가능			제정안과 유사
실시계획의 승인 등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규모와 내용, 구역 등을 포함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제정안과 유사
인허가등의 의제	실시계획을 승인받는 경우 각종 인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봄			제정안과 유사(의제범위 동일)
역세권개발사업 또는 주변지역개발사업	「역세권개발법」에 따라 역세권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사업 추진 가능		철도역사 예정 지역 경계부터 3km 범위를 주변개발 예정지역 지정 후 개발사업 추진	임호선의원안, 문진석의원안과 유사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추진단	별도규정 없음		추진단 설립	별도규정 없음
부담금 등의 감면	별도규정 없음	부담금 감면 규정	별도규정 없음	별도규정 없음
비용부담	건설비용 부담은 「철도건설법」 및 「역세권개발법」에 따름			제정안과 유사

구분	임호선의원안	문진석의원안	임종득의원안	달빛철도법
지역기업의 우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 가능			제정안과 유사
보고·검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 가능 등			제정안과 유사
승인의 취소 및 공사의 중지 명령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승인을 받은 경우 등 승인 취소 및 공사중지 명령 가능			제정안과 유사
청문	승인 취소 및 공사중지 명령 시 청문절차 거쳐야 함			제정안과 유사
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소속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 가능			제정안과 유사
벌칙	공사중지 명령 위반자에게 벌금 부과			제정안과 유사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등이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법인도 처벌			제정안과 유사
과태료	국토교통부장관의 검사를 거부한 자 등 과태료 부과			제정안과 유사
부칙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제정안과 유사

3. 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가. 국토교통부

중부권횡단철도는 경제성 부족 등의 이유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추가검토 사업으로 반영되었으며 현 시점에서의 추진 필요성은 낮은 상황인바,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체계적 국가 철도망 구축을 위해,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여 국가 철도망 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한 후 예비타당성조사 등 기존 절차(「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관련하여 사업 추진 상 불확실성 해소 및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 등에서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인데, 국가 전체적 철도망 체계 구상, 타당성 및 우선순위 고려 없이 특별법으로 예비타당성조사면제 추진 시 철도 투자체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부담금 등의 감면과 관련하여서는 철도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대상 사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불필요하다는 입장임.

나. 기획재정부

우선, 기본 법령과 절차로도 철도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정안 제7조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조항

관련, 국가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시각에서 재정운용의 효율성·통일성 제고 등을 위해, 개별법보다는 예비타당성 조사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국가재정법」 체계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개별 법률로써 특정 사업의 예타 면제를 규정하는 것은, 예타 제도의 형해화 초래 및 유사사례 등으로 법제화 파급 가능성 등을 고려시 신중할 필요가 있음.

다. 행정안전부

중부권동서횡단철도건설추진단은 국토부장관 소관 사무인 철도건설 업무를 담당하는 하부기구로서, “정부조직·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정부조직 관계 법령에서 규정해야 할 사항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부담금 등의 감면과 관련하여서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은 생태계 복원 및 국방목적 사업만 부과 예외가 인정되며,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므로 해당 규정 삭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라. 환경부

인허가 의제조항과 관련하여 「행정기본법」 제24조제3항1)에 따라 관계

1) 「행정기본법」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③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만 의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는 입장임.

마. 국방부

인허가 의제조항과 관련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²⁾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는 의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임.

바. 농림축산식품부

인허가 의제조항과 관련하여 초지의 전용은 「초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동 법률 제정안에서 의제 처리가 가능토록 한 실시계획 승인의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초지전용 허가·승인 권한자인 시장·군수·구청장과 의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임.

부담금 등의 감면과 관련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농지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 법령에서 부담금 감면대상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임.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11호 또는 제12호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장등(제1호의 경우에는 주둔지부대장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출입. 다만,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

가. 통제보호구역

나.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사. 법무부

안 제16조제1항제1호의 “허가 또는 승인”과 안 제16조제1항제3호의 “명령이나 처분”의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으로 인용하고 있는 법령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아. 공정거래위원회

지역기업의 우대와 관련하여,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에서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 체결 시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하는 것은 경쟁제한 우려가 있으며,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음에도 주된 영업소가 해당 지역과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기회를 박탈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자. 국가권익위원회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국민의 안전’이라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익침해행위’로 포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본 제정안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로 신설하는 취지의 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차. 산림청

인허가 의제조항과 관련하여, 인허가 의제조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의 추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부담금 등의 감면과 관련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여부는 소관법률인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제정안은 선언적 규정으로 별도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4. 총괄적 검토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등 우리나라 중부권 지역은 국토의 중심 지역에 위치하나 간선 교통망이 남북 종단 위주로 추진됨에 따라 중부권의 교통·물류 인프라가 취약하며, 동해안과 서해안을 연결하는 중부권 횡단철도 건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됨.³⁾

제정안은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여 서산과 울진을 연결하는 동서횡단철도를 건설함으로써 서해안과 동해안의 산업클러스터, 관광지역을 연결하고 물류네트워크를 고도화함으로써 중부권을 영남권, 호남권과 더불어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분산할 수 있는 경제 권역으로 성장시키려는 취지로서 입법 취지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제정안의 도입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먼저, 별도 법률 제정없이도 현행법 체계에 따라 중부권동서횡단철도의 건설이 추진가능한 측면이 있음. 철도 건설의 경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하고 기본계획, 실시계획 수립을 통해 추진할 수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의 경우에도 「국가재정법」에 지역 균형발전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⁴⁾ 다만, 추진방안 등이 구체적이어야

3)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촉구 건의문」(2016.10.28. 청주시의회),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신속 추진 촉구 결의문」(2021.4.13. 충청남도의회) 등 참조

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되어야 하는 등의 요건이 있음.

다음으로, 개별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이하 “SOC”) 사업에 대하여 특별법을 제정한 사례와 비교 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개별 SOC에 대한 특별법으로는 제정안의 입법 모델인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있음.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경우 철도 분야에서 개별 노선 사업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한 첫 사례로, 동 사업이 영호남 화합의 상징성을 가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포함하여 신속한 철도 건설을 위해 제정된 바 있음.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에 대해서도 달빛철도와 동일한 방식의 입법화가 필요한지 여부 및 개별 철도 노선에 대한 입법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동남권 신공항 지역을 둘러싼 국가적·사회적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신속한 공항 건설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는 취지로 제정되었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

4)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중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별법」의 경우 대구광역시 도심에 자리한 군 공항의 소음발생과 고도제한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이고 군 공항 및 민간 공항 이전, 이전주변지역 지원, 종전부지 개발 등 여러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바 있음.

종합적으로 볼 때, 제정안에 대한 심사 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측면과,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체계적으로 국가 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해 현행법 체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비교 검토하여 제정안 도입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조문별 검토

가. 목적, 정의 및 기본방향(안 제1조 ~ 제3조)

임호선의원안	문진석의원안	임종득의원안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충청남도 서산시와 경상북도 울진군을 연결하는 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부권동서횡단철도”란 충청남도 서산시와 경상북도 울진군을 잇기 위하여 건설되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철도를 말한다. 2.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이란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각 목의 시설 건설사업 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를 위한 주거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의 기반조성사업 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시설·군사시설 또는 공용건축물(철도시설은 제외한다)의 건설사업 라. 건설된 철도시설의 토지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을 말한다)을 취득하거나 그 사용권원(使用權原)을 확보하는 사업 마. 그 밖에 철도 건설과 관련한 시설의 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조(기본방향) 국가는 다음 각 호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중부권동서횡단철도를 건설하여야 한다. 1. 충청남도, 충청북도 및 경상북도 간 여객·물류의 확장과 미래 수요를 반영한 첨단화 추진 2. 철도시설 관리 및 철도차량 운행에 대한 안전이 확보된 철도의 신속한 건설 3. 충청남도, 충청북도 및 경상북도 간 지역화합과 상생발전 4.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을 활성화하는 국토의 균형발전		

제정안 제1조는 이 법의 제정 목적을 충청남도 서산시와 경상북도 울진군을 연결하는 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은 제2조제1호에서 “중부권동서횡단철도”를 충청남도 서산시와 경상북도 울진군을 잇기 위하여 건설되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5)에 따른 일반철도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철도의 유형을 운행 시속에 따라 구별하는 경우, “고속철도”란 열차가 주요 구간을 시속 200킬로미터 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고시하는 철도를 의미하고, “일반철도”는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를 의미하는바, 제정안은 중부권동서횡단철도를 고속철도로 건설하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임.

제정안은 제3조 기본방향에서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간 여객·물류의 확장과 미래 수요를 반영한 첨단화 추진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중부권횡단철도 건설을 추진하도록 규율하고 있음.

목적, 정의, 기본방향 조항은 모두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동일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됨.

5)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철도”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2. “고속철도”란 열차가 주요 구간을 시속 200킬로미터 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고시하는 철도를 말한다.
3. “광역철도”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4. “일반철도”란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를 말한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4조)

임호선의원안	문진석의원안	임종득의원안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 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정안은 제4조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아울러 제4조제2항에서 국가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중부권동서횡단철도는 국유철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바, 재원부담의 주체가 국가가 되도록 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도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음.

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계획과의 관계(안 제5조 및 제6조)

임호선의원안	문진석의원안	임종득의원안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제정안은 제5조에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을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동 제정안의 취지가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할 때 제정안 제5조는 필요한 것으로 보임.

제정안은 제6조에서 다른 계획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이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예외로 국토종합계획,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규정하고 있음. 유사 입법례인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도 제정안과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음.

다만,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이 법에 따른 계획보다 상위계획으로 두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당시 달빛철도, 즉 광주~대구 신규 철도사업은 이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었던 사항으로서 법률 제정 후 달빛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세부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이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하는 사항이 아니었으므로 법정계획 간의 체계상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우선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였음.

그런데,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의 경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신규노선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법률이 제정되어 철도 건설에 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부합하지 않게되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이 법에 따른 계획보다 상위계획으로 둘 경우 이 법에 따른 계획의 효력을 어떻게 볼 지에 대해서 불명확해지는 점이 있음.

라.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안 제7조)

임호선의원안	문진석의원안	임종득의원안
제2장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 및 지원 등		
제7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의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⁶⁾

제정안은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예비타당성조사 자체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점⁷⁾, 결과가 부정적으로

6)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7) 「예비타당성 운용지침」에 따를 때 철도부문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에는 12개월이 소요되는 것이 원칙이나 경제성 평가 등 비용 편익 분석 결과 등에 쟁점사항이 발생하거나, 부처간 이견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1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음.

「예비타당성 운용지침」

제39조(예비타당성조사 기간) ①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은 9개월(철도부문 12개월)을 원칙

나오는 경우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의 지연 및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제정안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근거를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는데, 현행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절차대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하는 방안과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입법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규정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는 제정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힘. 국가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시각에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별법보다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국가재정법」체계에서 이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 하에,

특별법에 「국가재정법」의 예비타당성조사 규정과 상이하거나 유사·중복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개별 법률로써 특정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규정하는 것은, 예비타당성제도의 형해화를 초래하고 유사사례 등으로 법제화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참고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에 대한 입법례로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⁹⁾, 「

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최대 18개월(철도부문 24개월) 이내에서 수행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¹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¹¹⁾이 있으며, 네 법 모두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를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음.

또한 예비타당성조사의 기간 단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입법례도 있는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¹²⁾,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¹³⁾이 해당 사례임.

8)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7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신공항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9)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9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10)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7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1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략산업등의 신속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관련 법령과 「과학기술기초법」 제12조의3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화단지 지원 사업
2.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3. 그 밖에 전략산업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 목적,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 ②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국가·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면제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5조(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규 사업(규제자유특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한정한다) 중 사업목적,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3)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1조(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핵심전략

각 법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또는 경쟁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⁴⁾).

기술의 개발 등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목적,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으로서 경쟁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14) 실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24개 사업은 각각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니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았고,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3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단축하지 않고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0호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였음.

마.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8조)

임호선의원안	문진석의원안	임종득의원안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부권동서횡단철도의 수요 예측 2. 철도 건설의 경제성·타당성과 그 밖의 관련 사항의 평가 3. 개략적인 노선 및 차량 기지 등의 배치계획 4. 공사 내용, 공사 기간 및 사업시행자 5. 개략적인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6.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7. 환경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8. 지진 대책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하여서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④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같은 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철도의 건설에 관한 계획으로 본다.		

제정안 제8조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중부권동서횡단철도의 수요 예측, 철도 건설의 경제성·타당성과 그 밖의 관련 사항의 평가, 개략적인 노선 및 차량 기지 등의 배치계획, 공사 내용, 공사 기간 및 사업시행자, 개략적인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환경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지진 대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¹⁵⁾에서 규정하는

15)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건설사업을 체계적으로 하기

사항과 동일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¹⁶⁾에서는 철도의 건설에 관한 계획을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제정안 제8조제4항에서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또한 철도의 건설에 관한 계획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두어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점을 명확하게 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함.

유사 입법례인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도 제정안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위하여 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철도건설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래의 철도교통 수요 예측
2. 철도건설의 경제성·타당성과 그 밖의 관련 사항의 평가
3. 개략적인 노선 및 차량 기지 등의 배치계획
4. 공사 내용, 공사 기간 및 사업시행자
5. 개략적인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6.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7. 환경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8. 지진 대책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6)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에 관한 계획

바. 시행자 및 실시계획의 승인 등(안 제9조 및 제10조)

임호선의원안	문진석의원안	임종득의원안
제9조(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 ①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이 시행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철도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규정한 자 외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제9조에 따른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 구역, 사업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 및 변경에 관하여서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을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철도의 건설사업으로 본다.		

제정안은 제9조에서 중부권동서횡단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을 규정하되, 민자 사업시행자에 의해 사업이 시행될 제도적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음. 또한, 건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제정안 제10조제1항은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 구역, 사업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환경영향평가법」¹⁷⁾에서는 철도의 건설사업을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중부권동서횡단철도건설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철도의 건설사업으로 보아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대상으로 봄.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 승인 등의 내용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동일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17)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 6. (생략)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8. ~ 18. (생략)

②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 인허가등의 의제(안 제11조)

임호선의원안	문진석의원안	임종득의원안
제11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협의·승인·허가·인가·동의·해제·결정·신고·지정·면허·심의·처분·등록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제10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2.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의 건축 협의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5.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 및 광구(鑛口)의 감소처분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0.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1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의 허가 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지정의 해제		

임호선의원안	문진석의원안	임종득의원안
14.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 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1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신고(철도건설사업에 직접 필요한 공사용시설로서 건설 기간 중에 설치되는 공장만 해당한다) 1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17.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18.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1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改葬) 허가 20.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1. 「초지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초지에서의 형질변경 등 같은 항 각 호의 행위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2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23.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4항 전단 중 “20일”은 “30일”로 본다.		

제정안 제11조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 개별 법률에 따른 인·허가가 의제되는 것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인허가 의제 조항의 경우 인허가 의제의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제정안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의 범위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¹⁸⁾과 비교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 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의 의제 내용이 제외되어 있음. 다만 제정안의 인허가 의제 범위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 의제의 범위와 동일함.

인허가 의제의 범위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서의 출입허가는 의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며, 이는 국가보안과 관련된 사항을 인허가 의제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생각됨.

다만,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외에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서의 출입허가를 인허가 의제 대상

18)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협의·승인·허가·인가·동의·해제·결정·신고·지정·면허·심의·처분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제9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를 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으로 하고 있는 입법례가 다수 있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¹⁹⁾.

인허가 의제의 방식과 관련하여 환경부는 「행정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만 의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는 입장인데, 제정안은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²⁰⁾에 따른다고 하여 행정기관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만 의제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농림부에서는 초지의 전용은 「초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동 법률 제정안에서 의제 처리가 가능토

19) 「도시철도법」 제8조제1항제5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5호,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5호, 「하천법」 제32조제1항제6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9조제1항제13호 등

20) 「행정기본법」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① 이 절에서 “인허가의제”란 하나의 인허가(이하 “주된 인허가”라 한다)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이하 “관련 인허가”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② 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제5항 단서에 따른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해당 법령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 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에 인허가의제 시에도 해당 절차를 거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거친다.

제25조(인허가의제의 효과) ① 제24조제3항·제4항에 따라 협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된 인허가를 받았을 때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제26조(인허가의제의 사후관리 등) ① 인허가의제의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주된 인허가가 있는 후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25조 및 이 조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이 절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의제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록 한 실시계획 승인의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의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제시하였음.

다만, 「철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및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도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에서의 형질변경 등 같은 조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가 인허가 의제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점은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이외에도 산림청은 인허가 의제조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²¹⁾를 인허가 의제 범위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21)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산지전용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림(「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경영하고 관리하는 국유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①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발전설비(이하 “산지태양광발전설비”라 한다)의 설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25조(토석채취허가 등) ①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아. 역세권개발사업 또는 주변지개발사업(안 제12조)

임호선의원안	문진석의원안	임종득의원안
제12조(역세권개발사업)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역세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역세권개발구역 지정 및 역세권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주변지역개발사업) ① 시·도지사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속철도역사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3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가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주변개발예정지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변개발예정지역의 범위, 지정·변경 절차 및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호선의원안·문진석의원안 제12조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중부권동서횡단철도 역세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역세권개발구역 지정 및 역세권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이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동일한 내용임.

임종득의원안 제12조는 시·도지사가 고속철도역사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3킬로미터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는 「달빛철

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원안인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윤재옥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3938호)의 내용과 동일함.²²⁾

제21대 동 법안 심사 당시 철도역사 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 점, 주변지역 개발사업 조항을 도입할 경우 개발 절차, 개발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시행령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이는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철도역사 주변지역 개발에 대해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수정하였는바 이러한 논의 사항을 고려할 때 임호선의원안·문진석의원안과 같은 방식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보임.

역세권개발사업이란, 역세권개발구역에서 철도역 등 철도시설 및 주거·교육·보건·복지·관광·문화·상업·체육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조성 및 시설설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의미함²³⁾.

22)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제12조(주변지역개발사업) ① 시·도지사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속철도역사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3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가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주변개발예정지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변개발예정지역의 범위, 지정·변경 절차 및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역세권개발사업”이란 역세권개발구역에서 철도역 등 철도시설 및 주거·교육·보건·복지·관광·문화·상업·체육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조성 및 시설설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역세권개발구역”이란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임호선의원안·문진석의원안과 같이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의 가능성을 명시하는 경우, 개발구역의 지정, 기초조사, 의견청취, 사업계획의 수립, 사업시행자 지정, 관련 인허가 의제 등 사업의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자. 추진단 설립(임종득의원안 제13조)

임호선의의원안	문진석의원안	임종득의원안
별도규정 없음		제13조(중부권동서횡단철도건설추진단) ①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부권동서횡단철도건설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기관·법인·단체 및 사업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종득의원안 제13조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추진을 전담할 조직으로서 추진단을 두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 시 관계기관 등에게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임호선의의원안·문진석의원안에는 별도 규정이 없음.

동 규정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원안인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에 포함된 내용인데 법안 심사 당시 행정안전부가 전담기구 설치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정부조직 관련 법령에서 규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개별 철도 노선 건설을 위해 추진단을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적다는 의견 등이 제기됨에 따라 삭제된 바 있음. 이로써 이러한 논의 경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임종득의원안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는 정부 조직 관련 법령에서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함.

차. 비용부담(임호선의원안·문진석의원안 제13조, 임종득의원안 제14조)

임호선의원안	문진석의원안	임종득의원안
제13조(비용부담) ①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2조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조문번호는 임호선의원안을 중심으로 표기

비용부담 조항은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을,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²⁴⁾ 제20조에서는 철도건설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철도는 국고 부담으로 하고, 고속철도는 국고와 사업시행자 간의 분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는²⁵⁾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국가가 사

24)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철도건설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철도는 국고 부담으로 하고, 고속철도는 국고와 사업시행자 간의 분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속철도건설 비용에 대한 국고와 사업시행자 간의 분담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5)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비용의 부담) ①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업시행자에게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 사항은 일반철도 건설 및 역세권개발사업의 통상적인 비용 부담과 동일하게 규율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됨.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도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음.

카. 부담금 등의 감면(문진석의원안 제14조)

임호선의원안	문진석의원안	임종득의원안
별도규정 없음	제14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하천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하천 점용료·사용료,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도규정 없음

문진석의원안 제14조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 시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등의 부담금 등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임호선의원안·임종득의원안에는 별도 규정이 없음.

동 규정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원안인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에 포함된 내용인데 법안 심사 당시 국토교통부가 달빛철도 건설 시 발생하는 부담금 등은 국고 부담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사업시행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아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다는 입장을 제시함에 따라 해당 규정이 삭제된 바 있어 이러한 논의 경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타. 지역기업의 우대(임호선의원안 제14조, 문진석의원안·임종득의원안 제15조)

임호선의원안	문진석의원안	임종득의원안
제14조(지역기업의 우대)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 조문번호는 임호선의원안을 중심으로 표기

제정안의 지역기업 우대 조항은 사업시행자가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하려는 것임.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²⁶⁾ 및 「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는 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 체결 시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지역에 본점 소재지가 소재한 업체를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 체계에서도 제정안의 내용이 구현되고 있는 측면이 있음.

2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공동계약) ① ~ ② (생략)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해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 2. (생략)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당해 지역의 업체와 그외 지역의 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① ~ ⑥ (생략)

⑦ 제6항제2호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되는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소재한 업체이어야 한다.

제정안의 지역기업 우대 조항을 신설하는 경우 그 근거가 명확해지는 측면이 있으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행 법령보다 높은 수준의 우대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항 신설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외에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건설·개발 관련 법률에서 지역기업의 우대 조항을 두고 있음.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사업시행자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 제정되었음(2024. 4. 30.). 동 기준에서는 공동계약 체결 시 「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보다 지역기업이 공동수급체 참여가 용이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보다 높은 수준의 우대조건을 규정함.²⁷⁾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지역기업의 우대와 관련하여,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에서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 체결 시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하는 것은 경쟁제한 우려가 있으며,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음에도 주된

27)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

제4조(공사등의 공동계약) ① 제3조에 따른 공사등 계약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에 따라 구성한다. 다만, 제2조에 해당하는 지역기업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추가 참여할 수 있다.

② 지역기업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추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추가 참여하는 구성원의 총 수는 20인 이하여야 하며, 구성원별로 참여사업 추정금액 기준으로 300억원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5항에 따른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영업소가 해당 지역과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기회를 박탈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한바 있음.

파. 보칙(임호선의원안 제15조~제18조, 문진석의원안·임종득의원안
제16조~제19조)

임호선의원안	문진석의원안	임종득의원안
제3장 보칙		
제15조(보고·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사업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승인의 취소 및 공사의 중지 명령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승인(이하 “실시계획의 승인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2. 실시계획의 승인등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4. 사정이 변경되어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조문번호는 임호선의원안을 중심으로 표기

제정안은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을 위한 국토교통부장관의 보고 요구, 자료 제출 명령 및 현장 검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며, 사업시

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승인 등을 받는 경우에 대해 청문 절차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 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함.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이러한 사항은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절차적인 사항을 규율한 보칙 규정으로서 유사 입법례인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안 제16조제1항제1호의 “허가 또는 승인”과 안 제16조제1항제3호의 “명령이나 처분”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인용하고 있는 법률을 명확히 열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구체적인 규율 방식에 대해서는 유사 입법례와의 연계성, 해석의 명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생각됨.

하. 벌칙 및 부칙(임호선의원안 제19조~제21조, 문진석의원안·임종득의원안 제20조~제22조)

임호선의원안	문진석의원안	임종득의원안
제4장 벌칙		
제19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및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조문번호는 임호선의원안을 중심으로 표기

제정안은 벌칙규정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공사 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도 두고 있음. 또한, 과태료 규정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²⁸⁾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28)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 측량 또는 철도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2. 타인의 토지를 채료 적치장(積置場), 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는 행위

출입하거나 토지를 일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국토교통부장관의 보고 요구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제정안의 벌칙 및 과태료 수준은 유사 입법례인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및 철도 건설의 기본법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일한 수준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제정안은 부칙으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동일한 수준임.

제정안의 부칙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제정안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²⁹⁾의 “공익침해행위”로 포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다른 법률의 개정 부칙 조항을 신설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를 개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나무·흙·돌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29)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별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

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생략)

문 의 처
02)6788-5575